

수원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나90742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나9074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13 선고 2017가단2306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C

변론종결 2021. 10. 6.

판결선고 2021. 11. 2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13. 선고 2017가단2306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하남시 D 임야 84,99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9, 80, 81, 82, 7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3㎡ 지상 하우스, 같은 감정도 표시 83, 84, 85, 86, 83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1㎡ 지상 하우스(건물)를 각 철거하고, 같은 감정도 표시 59, 60, 70, 71, 72, 73, 74, 75, 76, 77, 78, 5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76㎡를 인도하며,

나. 하남시 E 임야 6,54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5, 96, 97, 98, 99, 9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5㎡ 지상 가건물, 같은 감정도 표시 91, 92, 93, 94, 9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5㎡ 지상 하우스를 각 철거하고, 같은 감정도 표시 66, 65, 64, 100, 101, 102, 103, 6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74㎡를 인도하며,

다. 6,669,000원 및 2019. 8. 12.부터 위 가.항 기재 선내 ‘ㄴ’ 부분 976㎡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2,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9. 8. 12.부터 위 나.항 기재 선내 ‘ㄴ’ 부분 974㎡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2,5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달리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제출된 증거도 없는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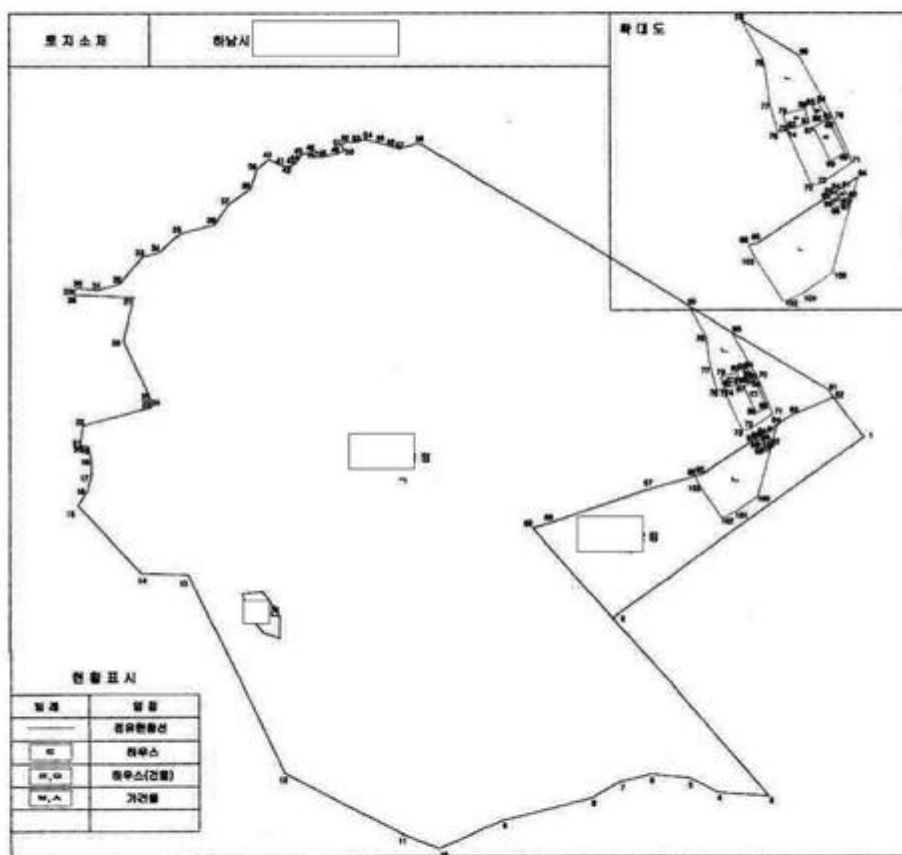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 이지형, 판사 최호열

별지

감정도



끝.

1) 피고는 2020. 11. 5.자 '준비서면 겸 조정요청서'에서 당심에 조정을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2021. 7. 5.자 당심 조정기일에 피고만이 출석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절차가 종료되었다.